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08. 4. 4.

운영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발의일자 : 2008년 3월 25일

나. 발 의 자 : 김기중 의원 외 4인

다. 회부일자 : 2008년 3월 28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35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8년 4월 2일)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김 기 중 의원)

가. 개정이유

- 1998.12.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문 제정 이후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면서 전문위원의 확충 등 사무국의 조직에 많은 변화가 있어 사무국 조직을 현실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2조를 제3조로,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조(하부조직)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밑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을 둔다

3.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의 要 旨 (專 門 委 員 김 병 욱)

- 이 건의 개정 규칙안은 사무국장 밑에 하부조직을 규정하였고 별표1의 전문위원별 직급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됨.

4. 審 査 結 課 : 原 案 可 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138
----------	-----

발의년월일 : 2008년 3월25 일

발 의 자 : 김기중 의원외 4인

1. 개정이유

- 1998.12.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문 제정 이후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면서 전문위원의 확충 등 사무국의 조직에 많은 변화가 있어 사무국 조직을 현실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3조를 제4조로,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조(하부조직)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밑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을 둔다
- 제4조(전문위원)

[별표] 는 별지와 같이 한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제6조
-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 다. 사전합의 : 필요 없음
-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4조로,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하부조직)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밑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을 둔다

제4조(전문위원)

[별표] 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생략) (<u>신 설</u>)</p> <p>제2조(사무국장) (생략) 제3조(전문위원) (생략)</p> <p>[별표1]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 관련)</p>	<p>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하부조직)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밑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을 둔다</p> <p>제3조(사무국장) (현행 제2조와 같음) 제4조(전문위원) (현행 제3조와 같음)</p> <p>[별표1] 전문위원별 직급(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위원회명</th> <th style="width: 33%;">직 위</th> <th style="width: 33%;">직 급</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행정위원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행정전문위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장5급 상당</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사회건설위원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회건설전문위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장5급 상당</td> </tr> </tbody> </table>	위원회명	직 위	직 급	행정위원회	행정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장5급 상당	사회건설위원회	사회건설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장5급 상당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위원회명</th> <th style="width: 33%;">직 위</th> <th style="width: 33%;">직 급</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운영위원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문위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상당 • 지방 별정6급상당</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행정위원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문위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상당 • 지방 별정6급상당</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사회건설위원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문위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상당 • 지방 별정6급상당</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특별위원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문위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상당 • 지방 별정6급상당</td> </tr> </tbody> </table>	위원회명	직 위	직 급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상당 • 지방 별정6급상당	행정위원회	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상당 • 지방 별정6급상당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상당 • 지방 별정6급상당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상당 • 지방 별정6급상당
위원회명	직 위	직 급																							
행정위원회	행정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장5급 상당																							
사회건설위원회	사회건설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장5급 상당																							
위원회명	직 위	직 급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상당 • 지방 별정6급상당																							
행정위원회	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상당 • 지방 별정6급상당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상당 • 지방 별정6급상당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상당 • 지방 별정6급상당																							